태국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타이왕국(Kingdom of Thailand) 2. 수도 : 방콕(Bangkok, 약 800만 명) 3. 인구・면적 : 약 6,918만 명(2018년), 약 514,000㎢(한반도의 2.3배) 4. 공용어 : 타이어(공용어), 중국, 말레이어 5. 1인당 GDP : 7,187달러(2018년) 6. 정부형태 및 의회 : 입헌군주제(내각책임제), 양원제

1. 명칭 : 태국 헌법재판소

○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Kingdom of Thailand

2. 연혁

○ 1997. 10. 11.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이른바 '국민의 헌법'으로 개정
- 헌법재판소 설치 규정 신설

○ 1998. 04. 11. 최초로 독립된 헌법재판소 설치

○ 1998. 06 .09. 헌법재판소 규칙 제정

○ 2007. 08. 20. 헌법 개정

○ 2016. 08. 07.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의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 결과 가결

○ 2017. 04. 06. 헌법 개정

3. 구성

○ 헌법재판소는 선정위원회가 선정하여 상원의 승인을 받고 국왕이

임명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

- 대법원 전체회의에서 선출되었고 3년 이상 수석 대법관 이상의 직위를 보유한 대법원 판사 3인. 수석 대법관을 선출할 수 없다면, 대법원 전체회의는 3년 이상 대법원 판사 이상의 직위를 보유한 사람 중에서 선출할 수 있음
- 최고행정법원 전체회의에서 선출되었고 5년 이상 최고행정법원 판사 이상의 직위를 보유한 최고행정법원 판사 2인
- 5년 이상 태국 대학의 교수직을 보유하고 현재 학문적 명성을 얻은 사람 중에서 선정된 법학 분야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 1인
- 5년 이상 태국 대학의 교수직을 보유하고 현재 학문적 명성을 얻은 사람 중에서 선정된 정치학이나 공공 행정 분야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 1인
- 5년 이상 단체장 이상의 직위, 정부 기관장과 동등한 직위 또는 법무차관 이상의 직위를 보유한 사람 중에서 선정된 자격이 있는 사람 2인

○ 헌법재판관은 출생시부터 태국 국적자로,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45세 이상 68세 미만의 청렴하고 직무 수행에 충분할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어야 함

○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7년으로 연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75세

○ 헌법재판소장은 9인의 재판관 중에서 호선

4. 권한

○ 위헌법률심판

- 추상적 규범통제 : 공포 전 법률안과 입법부의 절차에 관한 규칙 초안에 대한 위헌심사.

- 구체적 규범통제 : 이미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 상·하원, 국회, 내각, 독립 기관의 의무와 권한에 관한 문제

○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정부체제의 보호 : 누구도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정부 체제를 전복할 권리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며, 이러한 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행위를 중지하는 명령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할 권리를 갖고, 법무부 장관이 청원에 따른 신청을 거절하거나 청원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청원을 한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원을 할 수 있음

○ 헌법 제5장 국가의 의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게 청구된 소송

○ 자격심사 : 국회의원, 장관,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에 관한 심사

○ 세출 예산의 사용에 대한 국회의원 등의 관여 여부 판단 : 상원, 하원 또는 위원회에서의 심의에 있어서 세출 예산의 사용에 대한 직간접적 관여를 초래하는 제안, 발의의 제출 또는 행위의 수행은 허용되지 않음(헌법 제144조 제2항).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위반이 있다고 결정하면, 해당 제안, 발의의 제출 또는 행위의 수행은 무효가 되고, 이러한 위반을 한 사람이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이라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날로부터 그 자격이 상실되고 피선거권도 박탈됨. 내각이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이를 승인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인지하면서도 중지를 명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날로부터 내각 전원은 그 직을 상실(헌법 제144조 제3항)

○ 국회가 조약을 승인해야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경제 안보·사회·국가의 무역이나 투자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조약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 내각은 이에 대한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고, 헌법재

판소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헌법 제178조)

○ 헌법 개정의 합헌성에 관한 소송

○ 긴급명령(Emergency Decree)의 요건에 대한 위헌심사 : 국회의 제청으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이 헌법에서 정한 요건(헌법 제172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재적 헌법재판관 2/3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명령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해당 긴급명령은 소급하여 무효가 됨(헌법 제173조)

○ 헌법소원 :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나 자유가 침해된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대한 기본법」에 규정된 규칙·절차·조건에 따라 그 침해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진정을 제출할 권리를 보유(헌법 제213조)

○ 정당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소송

○ 정당해산심판

5. 심리 및 결정

○ 심리와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결정은 헌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짐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국가기관을 구속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단,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의 규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여전히 복역 중인 형사사건은 예외. 복역 중인 피고인은 석방됨

6. 연락처

○ 주　소 : Building A ,120 Moo 3 Chaengwattana Road, Laksi District, Bangkok 10210, Thailand

○ 전　화 : +66 0 2141 7777

○ 팩　스 : +66 0 2143 9522

○ 홈페이지 : http://www.constitutionalcourt.or.th

(영문: http://www.constitutionalcourt.or.th/en/occ_en/index.php)

※ 출처 : 태국 헌법

태국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대한 기본법 (2018)

태국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태국 왕국 헌법, 국회도서관, 2017

외교부 홈페이지

(2020. 2. 작성)